내용증명

발신인

성명: 나임차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갈공길 14 （서암동）

전화번호 : 02-000-000

수신인

성명 : 너임대

주소 : 경북 문경시 가은음 가은공단길 14 (왕능리） 전화번호 : 02-000-000

제목 : 임대 목적물 하자 수선 청구

1. 귀하의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귀하와 2024.01.0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갈공길 14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4.02.01부터 2026.02.이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임대료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계약을 갱신하고 거주하는 중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 수익에 필요 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임대 목적물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그 하자의 정도 는 현재 수선하지 아니 할 경우 본 건 목적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 하자의내용

**1） 화장실바닥의 파손**

1. 따라서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즉시，발신인이 본 건 임대목적물을 임대차계약의 본지에 따라 사용 • 수 익할 수 있도록 상기한 하자에 대한 수선 및 보수를 2024.03.01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까 지 수선 및 보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본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물론，본 건 임대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 에 장애를 겪은 기간 동안 발생한 대체 거주비，이에 따라 추가된 교통비 등 제반 비용과 이사 비용，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정의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본 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 담하게 될 것이며，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따른 연 12%의 지 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뿐만 아니라，본 발신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바 귀하가 본 내용증명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화장실 바닥에 파손으로 목적물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여 근처 목욕탐 시설을 이용하며 비용이 발생**

2024년 02월 22일

**위 발신인**

**나임차 （인）**